

2005. 3.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지관련과태료
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세계화추진 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005. 3. 3	2005. 3. 4	2005. 3.10	2005. 3.10	기획감사과장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지관련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문민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시 국제교류 및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충주시세계화추진 협의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시장자문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협의회 기능을 활용하는 사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나.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지난 1년 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
-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안 제14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완화 및 차등(안 별표1)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정부의 준칙(안)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제정한 조례임
- 조례제정 후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은 물론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국제교류 등에 대한 자문 등은 94년 7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8. 4. 15일자로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서울 노원구, 마포구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자원의절약과제 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년간 포상금제도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 점을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중 개정지침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액과 월평균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 현금대신 현물로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는 한편,
-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도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포상금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 질의 : 현재 충주시는 일본, 중국 등과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답변 :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이 저조로 전국적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으로써 사안발생시 의회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면 무난할 것임

나.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붙 임

- 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1부
나.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